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노광희 의원 외 6인

1. 개정이유
 ○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결과(2014.10.27)를 반영하기 위해
 ○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제2항에 의거 「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(안)제4조(월정수당지급)제1항의 매월 월정수당 161만 2천원을 166만 8천원으로 정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
 나. 예산조치 : 2016년 당초 예산반영
 다. 기 타
 1) 2015년~2018년도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
 [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-1(2014.10.27)]
 2) 조례안예고 : 의견 없음〔2016. 11. 14~ 11. 18(5일간)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본문 중 “161만 2천원”을 “166만 8천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월정수당지급)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61만 2천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	제4조(월정수당지급) ① ----------166만 8천원-----.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